

# 044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 확대

## 제조업과 지식산업, 한 곳에서 함께 발전해요!

“수요업체들과 동떨어져 있어 불편한 점이 많은데, 왜 안 됩니까?”  
R사 대표는 답답합니다. 여론조사기업은 산단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해오던 R사는  
수요업체들과 가까운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싶어 산업단지  
부지를 물색했지만 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R사의 고충이 해소됐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규제 완화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비롯해 7개 지식산업 업종이 추가로  
산단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산업단지에  
새롭게 입주하는 지식산업 업체들은 기존의 제조업체들과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산업간 융합을 통한 산단 내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촉진



### 개선 전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 업종을  
13개 업종으로 제한

### 개선 후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 업종을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  
(추가업종 7개)

- ①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②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③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④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⑤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⑥ 물품감정·계량 및 견본 추출업, ⑦ 무형재산권 임대업제품 제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산업부, '14.8월)

# 045

디자인, 한 번의 출원으로 70여개국에서 동시 보호

## 디자인 등록, 한 번이면 70여개국에서 OK!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 제품을 모방하지 않게 막으려면 그 국가에서 우리 디자인을 출원해야 하잖아요. 근데 워낙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다 보니 이게 참 번거롭네요.” 네일아트 제품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K사 직원의 말입니다. K사는 제품출시 시점에 맞춰 각국에 디자인출원을 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대리인 선임비용이 과도해 이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디자인 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불편이 해소됩니다.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는 한 번의 출원만으로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제도로, 현지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부담 없이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외 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 한 번에 여러 국가의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간 1,600여건, 6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기대



### 개선 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각각 출원해야 함

### 개선 후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다수의 지정국에서 디자인 출원한 효과가 부여되는 국제출원제도를 도입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특허청, '14.7월)

문의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 8103)

# 046

수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원재료도 관세 환급

## 환급제도 개선으로 수출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하드디스크를 생산해 수출하는 S사에선 최근 수출물품 생산 과정에서 불량 제품이 다량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불량제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의 양은 손모량으로 인정받지 못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손모량이란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의 손실량을 말합니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선 손실이 컸습니다. 원재료 손실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불량품에 쓰인 원재료가 관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생기는 비용 부담까지 겹쳐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폐기처분하게 되는 불량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를 정상 수출제품을 만들 때 소요되는 손모량에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불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제조 불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 관세부담 완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수출 제조업체의 불량 발생비율이 1%인 경우  
연간 200억원의 환급지원 효과 예상



#### 개선 전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의 손실량은 관세 환급 대상.  
단,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는 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

#### 개선 후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의 손실량 모두(불량품 생산 포함)를  
'손모량'에 포함해 관세 환급.

단,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는 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14.4월)

# 047

원산지포괄증명기간 합리화로 FTA 특혜관세 적용 활성화

## 증명기간 따질 필요 없이 수출에만 신경 씁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자부품으로 TV를 만들어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A사는 한-미FTA 활용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을 낮춰 수출시 가격경쟁력을 갖추려면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이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물품이 이미 선적된 이후에 소급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포괄증명서'가 유효한지 세관 검증을 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란 동종동질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공급할 경우 매번 수출할 때마다 서류를 발급할 필요 없이 일정기간동안 반복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무역서류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출자가 증명일자와 다른 날짜로 소급발급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기업들은 이때마다 세관검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에 한국 관세청과 미국 관세청은 제도에 대한 해석 차이를 해소해 소급발급한 원산지포괄 증명서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 연간 약 243억원 이상의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예상, 기업 경쟁력 강화
- \* 한·미 특혜관세 미활용(3,482억원, '13년) × 포괄증명서발행(70%) × 소급발행(10%)



### 개선 전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이 증명일자보다 소급발급, 먼저 발급되는 경우 세관의 검증의뢰 대상이 됨  
원산지포괄 증명기간 내에 미국에서 선적되었으나 수입신고되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 불인정

### 개선 후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이 증명일자보다 소급발급, 먼저 발급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  
원산지포괄 증명기간 내에 미국에서 선적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시달 (관세청, '14.8월)

문의 :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 048

모든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카드로 냅니다!

“일시적으로 나가야 할 자금이 몰릴 때면 보험료 내기가 참 힘듭니다. 현금으로 내는 것도 불편하고요.” 중소기업 대표 P사장의 하소연입니다. 이제 이 같은 중소기업의 애로가 해소됐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간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월 보험료가 100만원이 안되는 사업장이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불편을 덜었습니다.



### • 기업의 일시적 자금운용 애로개선 및 보험료 카드납부 200억원\* 예상

\* (추정) 고용·산재보험 납부총액 1조원,  
신용카드 납부율 2% 가정시 200억원



#### 개선 전

고용·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부재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회사의 체납보험료의 경우에만 허용

#### 개선 후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고용부, '14.9월)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1)

# 049

상수원 상류 떡, 한과, 커피 공장 허용

## 강가에 커피, 빵 향기가 솔솔~ 지역경제는 솔솔~

그간 상수원 상류(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지점 7km 이내)에는 어떤 제조 공장도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과도하다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폐수가 생기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생계형 공장은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원 상류(취수원으로부터 4~7km 이내, 하천 경계로부터 500m 밖) 지역에 커피 가공업이나 빵 제조와 같은 공장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 상수원 상류 거주주민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개선 전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선 모든 제조업의 공장설립 제한

### 개선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생계형 공장\*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의 설립 허용

\* ① 커피 가공업, ② 떡·빵류 제조업, ③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④ 면류 제조업  
'수도법 시행령' 및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14.12월)

문의 : 환경부 정책총괄과 (044-201-7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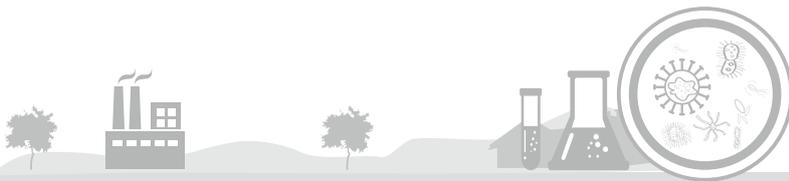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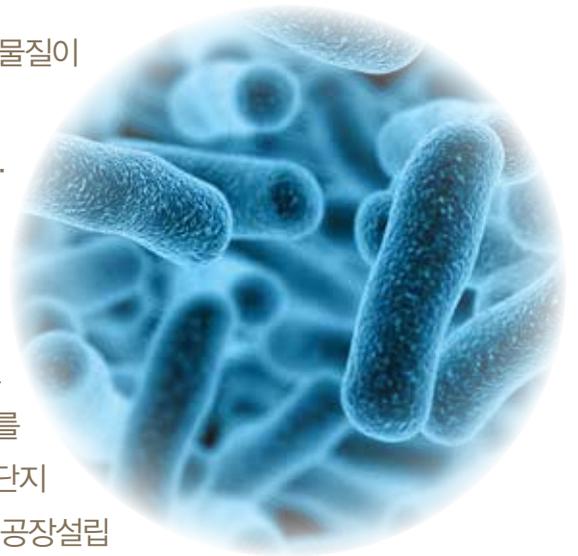
# 050

미생물제조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 가능

## 미생물이 꿈틀꿈틀, 농공단지에서 살아나요~

“우리 회사는 미생물을 이용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환경유해업종이란 거죠?”  
M기업은 공장설립부지를 구매하느라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비교적 토지가격이 저렴한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싶었지만 유해업종이란 이유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전엔 폐수의 성분이나 배출량과 무관하게, 환경유해업종으로 분류된 업체는 농공단지에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위해성이 적은 미생물(효소) 제조업을 농공단지 입주제한 업종에서 제외했습니다.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자들이 공장설립 부담을 덜게 된 것입니다.



### • 미생물제조 업종의 공장 설립 부담을

#### 3배 이상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농공단지 토지가격(평당 30~50만원),  
비농공단지 토지가격(평당 80~200만원)



#### 개선 전

폐수의 성분이나 배출량 고려 없이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을 환경유해업종으로 분류해 농공단지 입주를 제한

#### 개선 후

환경위해성이 적은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 가능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환경부, '14.9월)

문의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3)